

2009년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조정청구사건 전년 대비 64.9% 증가

2009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청구건수는 1,573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해 무려 64.9%(619건)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청구건수의 가파른 증가세는 2009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포털 등에 대한 조정신청이 폭발적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 청구건수, 정정 청구건수 앞질러

청구권별로는 손해배상청구가 44.4%(699건)로 정정청구의 43.9%(691건)에 비해 근소한 차이지만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정정이나 반론 청구건수를 앞지른 것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도입한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다. 연도별로도 정정청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손해배상청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도 181건으로 11.5%를 차지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도 181건으로 11.5%를 차지하여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 방송과 비교하여 신생매체인 인터넷매체의 비율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점차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피해구제율은 73.9%로 역대 최고 기록

2009년도 피해구제율은 73.9%로 역대 최고의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다. 2007년 65%대의 피해구제율을 보이다가 2008년 70%대로 도약한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위원회는 조정성립이외에도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을 통해 피해구제되었으나 처리결과상 취하된 사건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구제율을 구하고 있다. 피해구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피해를 구제했다는 의미이다.

▶ 인터넷 접수 57.5%로 높은 비중

인터넷 접수가 904건으로 57.5%를 차지하여 단연 높은 비중이었다. 인터넷접수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접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보급과 사용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며 이 비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KBS-2TV가 274건으로 가장 많아

KBS-2TV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조선일보 55건, MBC-TV 42건, KBS-1TV 32건, SBS-TV 32건, 동아일보 31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KBS-2TV가 274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일명 “루저녀” 사건이 266건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 손해배상 조정평균액 3,594,103원으로 꾸준히 증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액 평균은 3,594,103원으로 집계되었다. 조정의 평균액은 2007년 3,133,462원, 2008년 3,331,250원, 2009년 3,594,103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조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중재신청 건수는 111건으로 대폭 증가

중재부의 중립적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이루어진 중재신청 건수는 11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주된 침해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이 99건, 초상권이 10건, 음성권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총 691개 매체 자체심의 218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

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총 691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218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으며, 시정권고 신청된 48건의 보도 중 35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의결했다(시정권고 신청제도는 2009년 8월 7일부로 폐지되었다).

●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

제1장 조정신청 현황

1. 청구건수

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총 1,573건의 조정청구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도에 비해 무려 619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청구건수의 증가는 2009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포털도 조정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표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청구건수

구 분 \ 연 도	2007	2008	2009
청구건수	1,043	954	1,573
전년대비 증감	△ 44	△ 89	619

△ : 감소

2. 중재부별 청구건수

중재부별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1,173건으로 74.6%, 경기중재부가 103건으로 6.5%, 광주중재부 72건으로 4.6%로 나타나 주요 매체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중재부가 단연 높은 청구건수 비율을 보였다. 서울중재부에는 7개 중재부가 있으며, 1개 중재부당 평균 160여 건이 청구되었다.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청구건수

중재부 \ 연 도	2007		2008		2009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서울	644	61.7	607	63.6	1,173	74.6
부산	25	2.4	24	2.5	15	1.0
대구	32	3.1	30	3.1	35	2.2
광주	63	6.0	46	4.8	72	4.6
대전	41	3.9	32	3.4	42	2.7
경기	84	8.1	108	11.3	103	6.5
강원	14	1.3	15	1.6	26	1.6
충북	23	2.2	19	2.0	36	2.3
전북	65	6.2	39	4.1	33	2.1
경남	37	3.5	27	2.8	26	1.6
제주	15	1.4	7	0.7	12	0.8
계	1,043	100.0	954	100.0	1,573	100.0

3. 청구권별 청구건수

청구권별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는 699건으로 44.4%, 정정청구는 691건으로 43.9%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지만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정청구, 반론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도 정정청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손해배상청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조정대상 도입이후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정정이나 반론청구 건수보다 많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손해배상청구가 언론피해구제의 중요한 조정청구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건수

청구명	연도	2007		2008		2009		합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정	정	551	52.8	481	50.4	691	43.9	1,723	48.3
반론	반	115	11.0	127	13.3	142	9.0	384	10.8
추후	추	28	2.7	22	2.3	41	2.6	91	2.5
손배	손	349	33.5	324	34.0	699	44.4	1,372	38.4
계		1,043	100.0	954	100.0	1,573	100.0	3,570	100.0

병합청구된 청구건수 362건을 병합청구권별로 나누어보면, 정정 손배 병합청구가 286건으로 79.0%로 가장 많았고 정정 반론청구가 25건으로 6.9%를 차지, 뒤를 이었다.

[표 1-4] 최근 3년간 병합청구사건 건수

청구명	연도	2007		2008		2009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정·손배		232	83.8	211	72.8	286	79.0
정정·반론		19	6.9	17	5.9	25	6.9
정정·추후						1	0.3
반론·추후				1	0.3		
반론·손배		12	4.3	12	4.1	18	5.0
추후·손배		5	1.8	13	4.5	10	2.8
정정·반론·손배		9	3.2	35	12.1	20	5.5
정정·추후·손배				1	0.3	2	0.6
계		277	100.0	290	100.0	362	100.0

4.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2009년 청구된 1,573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847건으로 53.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반단체가 21.7%, 회사가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도 신청인 유형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신청인유형	2007		2008		2009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개 인	525	50.3	523	54.8	847	53.8
국가기관	101	9.7	32	3.4	74	4.7
지자체·공공단체	62	5.9	52	5.5	64	4.1
일반단체	145	13.9	180	18.8	341	21.7
종교단체	10	1.0	11	1.2	4	0.3
회 사	176	16.9	142	14.8	212	13.5
교육기관	24	2.3	14	1.5	31	2.0
계	1,043	100.0	954	100.0	1,573	100.0

5.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2009년 청구된 1,573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이 632건으로 40.2%, 방송이 459건으로 29.2%, 인터넷신문이 233건으로 14.8%로 조사되었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도 181건으로 11.5%를 차지하여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 방송과 비교하여 신생매체인 인터넷매체의 비율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점차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	2007		2008		2009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신 문	634	60.8	554	58.1	632	40.2
방 송	250	24.0	189	19.8	459	29.2
잡 지	10	1.0	12	1.3	27	1.7
뉴스통신	30	2.9	33	3.5	38	2.4
인터넷신문	113	10.8	157	16.5	233	14.8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11.5
기 타	6	0.6	9	0.9	3	0.2
계	1,043	100.0	954	100.0	1,573	100.0

매체유형별 청구건수를 세분하여 보면 신문은 중앙과 지방지의 비중이 엇비슷하나 방송은 네트워크 소유 구조의 영향으로 지상파 방송이 월등히 높으며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언론사닷컴(중속형))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조정청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7]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 청구건수	신 문			방 송			잡 지	뉴 스 통 신	인 터넷 신 문	인 터넷 뉴 스 서 비스	기 타
	중 앙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지 상 파		종 합 유 선 방 송					
				TV	라 디 오						
1,573	275	210	147	440	1	18	27	38	233	181	3
100.0(%)	17.6	13.2	9.3	28.0	0.1	1.1	1.7	2.4	14.8	11.5	0.2

참고로 개정된 언론중재법 시행(8월 7일) 이후의 청구건수만을 집계하면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가 268건으로 29.1%를 차지한 반면, 방송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이른바 방송통신매체(방송, 뉴스통신, 포털, 인터넷신문 등)는 전체 651건으로 70.7%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인쇄매체에 대한 청구건수를 앞지르고 있다.

[표 1-8] 매체유형별 청구건수(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전후 비교)

기 간	청 구 건 수	신 문			방 송			잡 지	뉴 스 통 신	인 터넷 신 문	인 터넷 뉴 스 서 비스	기 타
		중 앙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지 상 파		종 합 유 선 방 송					
					TV	라 디 오						
1. 1~8. 6.	653	168	119	82	113		13	22	20	114		2
8. 7~12.31.	920	107	91	65	327	1	5	5	18	119	181	1
합 계	1,573	275	210	147	440	1	18	27	38	233	181	3
	100.0(%)	17.5	13.4	9.3	28.0	0.1	1.1	1.7	2.4	14.8	11.5	0.2

6. 주된 침해유형

조정청구 사건의 침해유형은 몇 가지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침해사항은 명예훼손으로 1,457건 9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구제하기 어렵던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프라이버시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9] 최근 3년간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2007		2008		2009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명예훼손	953	91.4	899	94.2	1,457	92.6
신용훼손	2	0.2	6	0.6	6	0.4
초상권침해	53	5.1	29	3.0	56	3.6
음성권침해	12	1.1	10	1.0	5	0.3
성명권침해	3	0.3	4	0.4	1	0.1
프라이버시침해	11	1.0	3	0.3	18	1.1
기 타	9	0.9	3	0.3	30	1.9
계	1,043	100.0	954	100.0	1,573	100.0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침해유형중 초상권침해 등 기타 인격권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사건 80건을 침해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58건, 72.5%로 대부분이었고,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14건,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초상등을 이용한 경우가 8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0]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비율(%)
동의 없이 무단공표	58	72.5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보도	14	17.5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8	10.0
계	80	100.0

8. 조정대상기사의 분야

2009년 조정대상기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나 고발 등을 다룬 사회기사 756건으로 48.1%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이 스포츠연예 기사로 288건 18.3%, 노조관련 기사가 126건으로 8.0% 순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11] 조정대상기사의 분야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분야	건수	비율(%)
정치·선거	100	6.4
국방·외교	12	0.8
경제·산업	53	3.4
사회(사건/사고/고발)	756	48.1
보건·복지	29	1.8
스포츠·연예	288	18.3
레저·생활	75	4.8
환경	21	1.3
종교	27	1.7
노조	126	8.0
교육	31	2.0
미디어	39	2.5
기타	16	1.0
계	1,573	100.0

9. 조정대상 기사의 유형

신문 잡지 등의 조정대상기사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스트레이트기사가 849건으로 76.2%를 차지

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사건사고를 다룬 사회기사가 기사분야별 분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게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주된 청구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2] 조정대상 기사(방송 외) 유형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유형별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849	76.2
사 설	42	3.8
논단 및 칼럼	60	5.4
인 터 뷰	18	1.6
외부필자 기고	16	1.4
비 평	4	0.4
탐사·심층·기획보도	99	8.9
사 진	10	0.9
통계·표	4	0.4
가 십	3	0.3
기 타	9	0.8
계	1,114	100.0

방송의 경우는 방송 장르별로 연예 스포츠관련 보도가 273건으로 59.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뉴스분야가 136건으로 29.6%, 시사고발 분야가 29건 6.3%, 교양정보가 18건 3.9% 순으로 분류되었다. 연예, 스포츠 보도가 초상권이나 음성권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조정청구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1-13]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청구건수

방송 장르별	건수	비율(%)
뉴 스	136	29.6
시사고발	29	6.3
드 라 마	2	0.4
교양정보	18	3.9
연예, 스포츠	273	59.5
다큐멘터리	1	0.2
계	459	100.0

10. 접수유형

청구된 사건을 접수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접수가 904건으로 57.5%를 차지하여 단연 높은 비중이었다. 인터넷접수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접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보급과 사용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며 이 비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 도입되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1-14] 최근 3년간 접수유형별 청구건수

접수유형	연도		2007		2008		2009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방문	454	43.5	354	37.1	429	27.3		
우편	251	24.1	233	24.4	225	14.3		
인터넷	311	29.8	358	37.5	904	57.5		
구술	27	2.6	9	0.9	15	0.9		
계	1,043	100.0	954	100.0	1,573	100.0		

제2장 조정처리결과 현황

1. 처리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이 538건으로 34.2%, 직권조정결정 109건으로 6.7%, 조정불성립결정 88건 5.6%, 기각/각하 267건 16.9%, 취하 575건 36.6%로 각각 집계되었다. 처리결과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조정성립, 조정결정, 취하, 각하 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조정불성립결정은 2007년 18.6%에서 2008년 13.1%로 10%대를 보이다가 2009년은 5.6%로 급격히 낮아져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구분	청구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의)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100.0(%)	42.1	3.7	1.8		13.1		2.2	0.4	36.7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100.0(%)	34.2	4.2	2.5		5.6		16.3	0.6	36.6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 피해구제율

2009년도 피해구제율은 73.9%로 역대 최고의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다. 2007년 65%대의 피해구제율을 보이다가 2008년 70%대로 도약한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위원회는 조정성립이외에도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을 통해 피해구제되었으나 처리결과상 취하된 사건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구제율을 구하고 있다. 피해구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피해를 구제했다는 의미이다.

[표 2-2] 피해구제율

청구건수 [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1,573	267	1,306	965	73.9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조정건수 = 청구건수 - 기각·각하건수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건수+조정결정 중 동의건수+(불성립결정건 또는 직권조정결정 중 이의신청건 또는 취하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건수

3.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정정청구는 76.0%, 반론청구는 81.7%, 추후청구는 92.5%, 손해청구는 67.0%로 각각 조사되었다. 손해배상청구는 67.0%로 평균 피해구제율 73.9%보다 6.9% 밀도는 것으로 보아 반론청구나 추후청구에 비해 피해구제가 다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계 속							
2007	정정	551	223	12	17	(1)	103	(5)	22	3	171	(94)	63.7
	반론	115	52	2	1		22		4	1	33	(25)	71.8
	추후	28	7				2		2		17	(14)	80.8
	손배	349	77	8	14	(1)	67		14	2	167	(124)	63.1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정정	481	220	18	9		60	(1)	8	2	164	(104)	72.8
	반론	127	56	6	1		12		7		45	(29)	75.8
	추후	22	11				2		2		7	(3)	70.0
	손배	324	115	11	7		51	(2)	4	2	134	(101)	72.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정정	691	286	46	21		50		15	2	271	(180)	76.0
	반론	142	67	4	5		3		10	1	52	(36)	81.7
	추후	41	13				2			1	25	(24)	92.5
	손배	699	172	16	13		33		232	6	227	(121)	67.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와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100%, 지자체/공공단체가 79.7%, 회사가 78.9%, 일반단체가 78.7%, 국가기관이 75.0%, 교육기관 71.0%, 개인 68.7%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피해구제는 단체에 비해 다소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계 속								
2007	개 인	525	165	15	19	(2)	90	(3)	27	3	206	(131)	63.8	
	단 체	국가기관	101	44	1	2		15	(1)	3		36	(27)	74.5
		지자체·공공단체	62	21		1		20				20	(12)	53.2
		일반단체	145	48	3	1		31		7	3	52	(40)	67.4
		종교단체	10	6								4	(4)	100.0
		회사	176	65	3	7		38	(1)	4		59	(37)	61.6
		교육기관	24	10		2				1		11	(6)	69.6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개 인	523	221	20	6		69	(3)	13		194	(142)	75.7	
	단 체	국가기관	32	13	3	2		2				12	(9)	78.1
		지자체·공공단체	52	28	1			10		1		12	(5)	66.7
		일반단체	180	70	5	8		19		5		73	(47)	69.7
		종교단체	11	5								6	(5)	90.9
		회사	142	60	6	1		22		2	4	47	(29)	69.9
		교육기관	14	5				3				6		35.7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개 인	847	243	15	22		42		240	10	275	(152)	68.7	
	단 체	국가기관	74	32	6	3		2		2		29	(16)	75.0
		지자체·공공단체	64	27	5	1		3				28	(19)	79.7
		일반단체	341	139	21	4		22		12		143	(99)	78.7
		종교단체	4	4										100.0
		회사	212	78	17	6		17		3		91	(70)	78.9
		교육기관	31	15	2	3		2				9	(5)	71.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예인이 100%, 종교인 88.6%, 회사원 88.4%, 학생 88.2%, 개인사업가 81.0%, 군인/경찰이 80.8% 순으로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반면 정당정치인 0.0%, 기초광역단체장/의원은 42.1%, 언론인 43.5%, 공무원이 52.2%로 낮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피해구제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 분 직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46	21	2	7	5			11	(7)	65.2	
법조인	4	3						1		75.0	
공무원	23	8		4				11	(4)	52.2	
군인/경찰	26	12		1	2			11	(9)	80.8	
기초광역단체장/의원	19	7		2	5			5	(1)	42.1	
정당정치인	2				2					0.0	
의료인	28	10	2		3	3		10	(6)	72.0	
문화예술인	17	9	2		1			5	(1)	70.6	
종교인	35	28		2				5	(3)	88.6	
회사원	49	11			1	6		31	(27)	88.4	
언론인	27	8	2		8	2	2	5		43.5	
교육자	36	14			3	3		16	(12)	78.8	
개인사업가	87	45	4	2	4	1	2	29	(19)	81.0	
연예인	4	2						2	(2)	100.0	
학 생	26	2				9		15	(13)	88.2	
시민활동가	4	2						2	(1)	75.0	
조합대표협회장	21	9			2			1	9	(6)	75.0
기타	393	52	3	4	6	216	5	107	(41)	55.8	
계	847	243	15	22	42	240	10	275	(152)	68.7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뉴스통신 94.1%, 잡지 92.6%, 인터넷뉴스서비스 84.8%, 인터넷신문 78.9%, 신문 71.7%, 방송 61.9%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부터 새롭게 조정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인터넷신문과 마찬가지로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이는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수용할 지면이나 시간 공간이 방송이나 신문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7	신 문	634	226	12	15	(1)		112	(3)	25		244	(172)	68.0
	방 송	250	71	7	17	(1)		52	(1)	11	1	91	(53)	55.9
	잡 지	10	4	2				2				2	(2)	80.0
	뉴스통신	30	10	1				6	(1)	1		12	(7)	65.5
	인터넷신문	113	44					22		5	5	37	(23)	65.0
	기 타	6	4									2		66.7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신 문	554	241	22	7			69	(3)	5		210	(145)	74.9
	방 송	189	77	2	5			35		9		61	(27)	58.9
	잡 지	12	5		1			2				4	(1)	50.0
	뉴스통신	33	15	1	2							15	(15)	93.9
	인터넷신문	157	62	8	2			17		5	4	59	(49)	80.4
	기 타	9	2	2				2		2		1		57.1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신 문	632	253	40	24			50		11	3	251	(150)	71.7
	방 송	459	89	5	7			20		230	3	105	(46)	61.9
	잡 지	27	18					2				7	(7)	92.6
	뉴스통신	38	12	2						4		20	(18)	94.1
	인터넷신문	233	118	3	5			14		6		87	(58)	78.9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47	16	3			2		6	4	103	(82)	84.8
	기 타	3	1									2		33.3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성명권 100%, 신용권 100%, 프라이버시 83.3%, 초상권 82.1%, 음성권 80.0%, 명예훼손 73.4% 기타 67.9%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명예훼손은 2007년 64.5%, 2008년 72.4%, 2009년 73.4%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초상권은 80%대로 고른 구제율을 보인 반면, 성명권과 음성권은 2007년보다 높은 구제율을 나타냈다. 이는 점차 언론피해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권리보호의식도 강화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							
2007	명예훼손	953	331	18	29	(1)	185	(5)	38	4	348	(233)	64.5
	신용훼손	2					2						0.0
	초상권	53	21	3	2	(1)	2				25	(18)	81.1
	음성권	12	1	1	1		3				6	(3)	41.7
	성명권	3									3	(1)	33.3
	프라이버시	11	4				1			1	5	(2)	60.0
	기타	9	2				1		4	1	1		50.0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명예훼손	899	375	35	16		122	(3)	18	4	329	(222)	72.4
	신용훼손	6	3								3	(1)	66.7
	초상권	29	11		1		3		1		13	(10)	75.0
	음성권	10	5								5	(4)	90.0
	성명권	4	4										100.0
	프라이버시	3	3										100.0
	기타	3	1						2				100.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명예훼손	1,457	498	63	35		86		249	10	516	(318)	73.4
	신용훼손	6	4								2	(2)	100.0
	초상권	56	20	1	4		2				29	(25)	82.1
	음성권	5	4								1		80.0
	성명권	1	1										100.0
	프라이버시	18	5	1					6		6	(4)	83.3
	기타	30	6	1					2		21	(12)	67.9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를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76.9%, 지방은 67.0%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제3중재부가 94.9%로 가장 높고, 서울제1중재부가 87.5%로 그 다음을, 서울제7중재부가 86.6%로 세 번째로 높았다. 충북중재부가 50.0%, 경기중재부가 56.3%, 대구중재부가 60.0%로 저조한 편이었다.

[표 2-8] 최근 2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7	서울1	115	29	14	3	20	(1)	17		32	(24)	69.4	
	서울2	101	30		9	(1)	21		10	1	30	(22)	58.9
	서울3	104	42	1	1		9	(1)	3		48	(42)	85.1
	서울4	98	60	2	4		11				21	(13)	76.5
	서울5	111	32				42	(1)			37	(17)	45.0
	서울6	115	31	3	11	(1)	18		3	5	44	(22)	53.3
	소 계	644	224	20	28	(2)	121	(3)	33	6	212	(140)	64.3
	부 산	25	10	1			1	(1)	2		11	(5)	73.9
	대 구	32	13				7	(1)	2		10	(5)	63.3
	광 주	63	21		4		11				27	(19)	63.5
	대 전	41	16				9				16	(11)	65.9
	경 기	84	20	1			24		4		35	(23)	55.0
	강 원	14	8				2				4	(1)	64.3
	충 북	23	11				1				11	(7)	78.3
	전 북	65	19				5				41	(31)	76.9
	경 남	37	13				11		1		12	(9)	61.1
제 주	15	4				2				9	(6)	66.7	
소 계	399	135	2	4		73	(2)	9		176	(117)	65.6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서울1	103	31	15	3	20		3	4	27	(17)	65.6	
	서울2	95	47	4		20	(1)	4		20	(14)	72.5	
	서울3	112	51			2		3		56	(44)	87.2	
	서울4	104	46	5	3	5		4		41	(28)	79.0	
	서울5	101	48		2	12	(1)	2		37	(30)	79.8	
	서울6	92	45		4	9		1		33	(23)	74.7	
	소 계	607	268	24	12		68	(2)	17	4	214	(156)	76.8
	부 산	24	5		1		10	(1)	1		7	(2)	34.8
	대 구	30	18								12	(5)	76.7
	광 주	46	14	1	3		12				16	(10)	54.3
	대 전	32	12				2				18	(10)	68.8
	경 기	108	29	1	1		23				54	(39)	63.9
	강 원	15	11	2			1				1	(1)	93.3
	충 북	19	10								9	(4)	73.7
	전 북	39	19	3			5				12	(5)	69.2
	경 남	27	9	4			4		3		7	(5)	75.0
제 주	7	7										100.0	
소 계	347	134	11	5		57	(1)	4		136	(81)	66.2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서울1	178	47	23	9	1		49	1	48	(42)	87.5	
	서울2	173	53	5	1	11		46	4	53	(23)	65.9	
	서울3	180	72	9			3		44		52	(48)	94.9
	서울4	177	39	17	10		14		35	1	61	(46)	72.3
	서울5	174	55				11		39		69	(48)	76.3
	서울6	188	78	2	3		9		7	2	87	(34)	63.7
	서울7	103	22	7	2				36		36	(29)	86.6
	소 계	1,173	366	63	25		49		256	8	406	(270)	76.9
	부 산	15	8				2		1		4	(4)	85.7
	대 구	35	18	1	2						14	(2)	60.0
	광 주	72	36		2		16				18	(13)	68.1
	대 전	42	20								22	(16)	85.7
	경 기	103	32	2	9		4				56	(24)	56.3
	강 원	26	4								22	(19)	88.5
	충 북	36	9				10			2	15	(8)	50.0
	전 북	33	18		1		4				10	(2)	60.6
경 남	26	15				3				8	(3)	69.2	
제 주	12	12										100.0	
소 계	400	172	3	14		39		1	2	169	(91)	67.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9. 중앙일간지 및 중앙방송 처리결과

중앙일간지 대상 신청사건을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가 31건, 문화일보가 25건, 한겨레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방송의 경우는 KBS-2TV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MBC-TV 42건, KBS-1TV와 SBS-TV가 각 32건으로 나타났다. KBS-2TV가 274건을 기록한 것은 「미녀들의 수다」프로그램 일명 “루저녀” 사건이 266건이나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표 2-9] 중앙일간지 및 중앙방송 처리결과

매체 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건수	집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비시	기 타	조정성립	조 정 결	조 정 불 성립 결	기 각	각 하	취 하
중 앙 일 간 지	경향신문	21	20		1					7	8				6
	국민일보	9	7						2	6					3
	내일신문	10	10							3					7
	동아일보	31	29		2					11	7	5	1		7
	문화일보	25	23					2		13	1				11
	서울신문	15	15							7	2	1			5
	세계일보	8	8							1	1				6
	조선일보	55	51		1			3		14	15	6	4		16
	중앙일보	21	21							5	1	3			12
	한겨레	24	15						9	11	4				9
	한국일보	2	2							1					1
계	221	201		4			5	11	79	39	15	5		83	
중 앙 방 송	KBS-1,2TV	7	6		1					1		2			4
	KBS-1TV	32	26		4				2	14		4		2	12
	KBS-2TV	274	269		2			3		7	1		226		40
	MBC-TV	42	34		6				2	16	7	3	1	1	14
	SBS-TV	32	13		9	2	1	7		17	2	3	2		8
	EBS-R	1	1										1		
	계	388	349		22	2	1	10	4	55	10	12	230	3	78

10.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09년 손해배상청구 평균액은 221,393,861원이었으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액 평균은 3,594,103원으로 집계되었다. 청구액 변화는 별 의미가 없으나 조정의 평균액은 2007년 3,133,462원, 2008년 3,331,250원 2009년 3,594,103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조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0]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구 분 연 도	청 구 액				조 정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7	1	100,000,000,000	400,663,571	20,000,000	490,000	10,000,000	3,133,462	2,000,000
2008	110,000	10,000,000,000	185,920,574	20,000,000	300,000	10,000,000	3,331,250	2,750,000
2009	100	50,000,000,000	221,393,861	20,000,000	120,000	30,000,000	3,594,103	2,000,000

손해배상 조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41.0%로 가장 많았다. 2007년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액수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손해배상액이 점차 증액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2-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구 분 연 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계
2007	5	18	15	9	5	52
%	9.6	34.6	28.8	17.3	9.6	100.0
2008	3	9	11	6	3	32
%	9.4	28.1	34.4	18.8	9.4	100.0
2009	6	9	16	4	4	39
%	15.4	23.1	41.0	10.3	10.3	100.0
계	14	36	42	19	12	123
%	11.4	29.3	34.1	15.4	9.8	100.0

제3장 중재신청 처리결과 현황

1.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조정절차와 별도로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이루어진 중재신청 건수는 11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주된 침해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이 99건, 초상권이 10건, 음성권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연도 \ 구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7	14			12			2	
2008	10	4		5		1		
2009	111	99		10		2		
계	135	103		27		3	2	
%	100.0	76.3		20.0		2.2	1.5	

2. 청구권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청구권별 청구건수를 보면, 정정청구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반론청구 25건, 손배 18건, 추후청구 7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은 전년도에 비해 정정청구 중재신청사건이 폭증한 것이 주목된다. 그 동안 중재가 손배청구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졌던데 반해 정정청구 사건이 급증하여 앞으로 중재신청 사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 청구권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연도 \ 구분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7	정 정	2	2					
	반 론							
	손 배	12	12					
	계	14	14					
2008	정 정	1	1					
	반 론							
	손 배	9	9					
	계	10	10					
2009	정 정	61	30	31				
	반 론	25	20	5				
	추 후	7	3	4				
	손 배	18	12	6				
	계	111	65	46				

3. 손해배상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중재신청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구 평균액은 20,500,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손배청구에 대한 중재 평균액은 1,630,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다.

[표 3-3] 손해배상 중재신청사건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연도 \ 구분	청 구 액				중 재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7	1,000,000	30,000,000	7,383,333	5,000,000	300,000	3,000,000	1,750,000	1,350,000
2008	5,000,000	30,000,000	15,888,889	15,000,000	900,000	4,000,000	2,322,222	2,000,000
2009	10,000,000	50,000,000	20,500,000	20,000,000	1,000,000	2,500,000	1,630,000	1,750,000

제4장 자동소제기 현황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21건이다. 그 중 인용이 4건, 취하 7건, 기각/각하가 3건, 진행중인 사건이 7건이다. 자동소제기된 주요 매체를 살펴보면, 조선일보, MBC-TV, KBS-TV 등이 있다.

[표 4-1] 연도별 자동소제기현황 및 법원 1심 판결결과

연도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 손배	정반론	정론 손배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2007	21	6		4	10	1		1	17	3	13	7	1	
2008	12	4		3	4	1		3	8	1	6	3	3	
2009	21	6	2	1	11		1	3	15	3	4	7	3	7
계	54	16	2	8	25	2	1	7	40	7	23	17	7	7

*인용은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청구인낙 등을 포함함

[표 4-2] 2009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현황

연도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 손배	정반론	정론 손배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여수신문	1	1						1				1		
문화일보	1			1				1			1			
KBS-1TV	2	1	1				1	1				2		
조선일보	3	1			2		1	2				2	1	
한겨레	1	1						1			1			
에클레시아뉴스	1				1			1			1			
중부일보	2				2			2			1	1		
반월일보	1	1						1				1		
동아일보	1				1			1					1	
동아닷컴	1				1			1					1	
MBC-TV	2	1				1		1	1					2
데일리팜	1		1					1						1
연수송도신문	1				1			1						1
경북제일신문	1				1		1							1
시사저널	1				1					1				1
인터넷시사저널	1				1					1				1
계	21	6	2	1	11	1	3	15	3	4	7	3	7	

[표 4-3] 연도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 조 정

1981. 3. 31 ~ 2009. 12. 31.

구 분 연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5)	1	2	20	(2)	39.0%
1982	50	19				19	(5)		2	10	(4)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52.2%
1984	54	12				29	(8)	3		10	(5)	49.0%
1985	59	12				28	(5)	4		15	(7)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6.3%
1987	47	10				9	(4)	1		27	(2)	34.8%
1988	55	16				12	(5)		1	26	(13)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계	13,891	4,650	315	268	(27)	2,481	(272)	562	86	5,529	(3,003)	62.4%
	100.0%	33.5%	2.3%	1.9%		17.9%		4.0%	0.6%	39.8%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 / 조정건수
 *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조정불성립결정·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이루어진 건수

■ 중 재

구 분 연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계 류
		중재결정	조정성립	기 각	각 하	취 하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계	142 (100.0%)	(67.6%)	(32.4%)				

● 시정권고현황 ●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총 691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218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으며, 시정권고 신청된 48건의 보도 중 35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표 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09. 12. 31.

연도	구분 권고 건수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 신문	주간 신문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미약용량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0																
1985	0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75		124	19	1	31	112
2009	253		1	97	6	15				93	41		56	15		20	132
계	5,730	717	134	1,923	1,039	304	1,004	418	191				4,992	112	16	271	306
	100%	12.5%	2.3%	33.6%	18.1%	5.3%	17.5%	7.3%	3.3%				87.1%	2.0%	0.3%	4.7%	5.3%

1.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분석

2009년 한 해 동안 자체심의를 통해 시정권고를 결정한 건수는 218건이며, 개인적 법익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가 119건으로 2008년 90건에 비해 증가한 반면, 사회적 법익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는 99건으로 2008년 192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법익침해 유형별로는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공개 97건(44.5%), 자살자 신원공개 93건(42.7%),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및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수법 상세묘사 및 성 관련 선정정보)가 각 6건(각 2.7%),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1건(0.5%) 순으로 나타났다.

2.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분석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30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간지 57건(26.2%), 뉴스통신 19건(8.7%), 주간지 12건(5.5%)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07년 43건, 2008년 111건, 2009년 13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의 지위를 획득한 언론사 닷컴도 시정권고 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되어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 57건은 중앙일간지 22건, 지역일간지가 35건으로 집계돼 전년도(중앙일간지 31건, 지역일간지 90건)에 비해 지역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09년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09. 1. 1. ~ 2009. 12. 31.

구 분 간 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 가 적 법 익 침 해
			성 폭 력 피 해 자 신 원 공 개	정 신 질 환 자 신 원 공 개	피 의 자 피 고 인 신 원 공 개	목 격 자 신 고 자 피 해 자 신 원 공 개	사 생 활 침 해 등	마 약 용 량 등 공 개	자 살 관 련 상 세 묘 사	기 타	
일간지	중앙	22			14	1	1		6		
	지역	35			21	1	3		10		
주간지	종합		9			4		2			3
	지역	3				2	1				
월간지		0									
뉴스통신		19			11	1	2		5		
인터넷신문		130		1	47	1	6		72	3	
총 계		218		1	97	6	15		93	6	
		100%		0.5%	44.5%	2.8%	6.9%		42.7%	2.8%	

3. 신청심의 현황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시정권고 신청제도는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2009년 8월 7일 폐지되었다. 2005년 이후 전체 시정권고 신청건수는 180건으로 2005년 17건, 2006년 50건, 2007년 39건, 2008년 26건, 2009년에는 48건이 접수되었다. 5년간 시정권고 신청이 접수된 180건을 처리 결과별로 살펴보면, 시정권고가 49건(27.2%), 취하가 61건(33.9%), 기각이 55건(30.6%), 기타 9건

(5.0%), 각하 6건(3.3%)으로 집계됐다. 침해유형별로는 개인적 법익 관련 94건(52.2%), 사회적 법익 관련 85건(30.8%), 기타 1건(0.6%)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방송 59건(32.8%), 일간지 48건(26.7%), 인터넷신문 28건(15.6%), 기타매체 19건(10.6%), 뉴스통신 12건(6.7%), 주간지 9건(5.0%), 월간지 5건(2.8%)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7일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시정권고 신청은 총 48건이 접수되었으며 침해유형별로는 개인적 법익 관련 1건(2.1%), 사회적 법익 관련 47건(97.9%)이었으며, 매체별로는 방송이 29건(60.4%), 인터넷신문 8건(16.7%), 주간지 3건(6.3%), 월간지·일간지·뉴스통신이 각 1건(2.1%), 기타 5건(11.1%)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시정권고가 35건(72.9%), 기각이 8건(16.7%), 각하가 5건(10.4%)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35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송이 29건(82.9%), 주간지 3건(8.6%), 인터넷신문 2건(5.7%), 뉴스통신 1건(2.9%)이었으며 35건 모두 사회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것이었다.

[표 3] 2009년도 신청심의 의결현황

2009. 1. 1. ~ 2009. 12. 31.

구 분 간 별	구 분 계	신 청 유 형				처 리 결 과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기 타	시정권고	기 각	각 하	취 하	기 타
일간지	중 앙 지 역	1		1				1		
	지 역	0								
주간지	중 합	0								
	지 역	3		3		3				
방 송		29		29		29				
월간지		1	1				1			
뉴스통신		1		1		1				
인터넷신문		8		8		2	6			
기 타			5	5					5	
총 계		48	1	47		35	85	5		
		100%	2.1%	97.9%		72.9%	16.7%	10.4%		